

September 19, 201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2014. 9. 19.부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강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 등을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시행됩니다.

1.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확대 제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시정신청을 한 당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별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기간제법 제15조의3 및 파견법 제21조의3). 또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의 형태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신설하여, 차별시정명령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에 대한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차별을 인정받게 되면 동일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칠 수 있게 되어 그 영향이 전사적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구법에 따르면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수준의 금전보상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기간제법 제13조 제2항). 이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명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존에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더라도, 그러한 초과근로가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설령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개정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이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4. 기업의 대응 방안

법개정으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강화되었으므로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을 미리 점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등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특히 유통업, 요식업 등) 개정법에 따라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점검하고 단시간근로자 추가고용이나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초과근로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영석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21	E-Mail. ysg@shinkim.com
● 김동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1646	E-Mail. dwokim@shinkim.com
● 김종현 변호사	TEL. 02 316 1721	E-Mail. johkim@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